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69
----------	-------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 의 자 : 이용우 · 박용갑 · 윤준병
윤종균 · 이수진 · 김한규
김남근 · 정태호 · 진성준
오세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2023년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적 토양에는 대기 중 탄소량의 3배에 해당하는 2,400기가톤(GtC)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5년에 발표한 ‘세계 토양 현황 보고서’에서도 “토양 탄소 저장량의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크고도 비용경쟁력을 갖춘 잠재력이 있다”라고 강조할 만큼 탄소흡수원으로서 토양의 중요성이 매우 큼.

토양의 적극적인 탄소 흡수·저장 역할과 이에 필요한 토양탄소 흡수·저장에 관한 통계·기술·제도 등을 보완하여 NDC상 흡수원으로 토양을 추가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토양의 탄소흡수를 정의하거나 부분적으로 규정한 법률만 있을 뿐 토양 기반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뒷받침할 구체적 법령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토양탄소의 정의와 토양탄소의 저장·흡수와 관련된 개념을 추가하고,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과 토양탄소 흡수·저장 기능의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토양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강화하여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제2조·제4조 및 제4조의2·제4조의3 신설 등).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화하는”을 “정화하며, 토양의 정화 및 토양의 탄소 저장·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는”으로, “토양생태계”를 “토양의 건강성과 토양생태계”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제4조의2”를 “제4조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토양탄소”란 토양 내에 유기물 또는 무기물 상태로 저장된 탄소를 말한다.

9. “토양탄소 흡수·저장”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토양 내에 흡수하고 토양 내 저장된 탄소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영구적 또는 장기적으로 토양 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토양탄소 흡수·저장원”이란 토양 내에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양탄소 흡수·저장원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까지로 하

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토양탄소 흡수·저장원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탄소 흡수·저장원 조성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탄소 흡수·저장원 조성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토양탄소 흡수·저장원의 조성·확충 및 개선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3(토양탄소 흡수·저장 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양탄소 흡수·저장원의 조성·확충 및 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2. 토양탄소 흡수·저장원 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3. 토양탄소 흡수·저장원 관련 산업기반 조성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지원
4. 그밖에 토양탄소 흡수·저장 기능 증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의5(중전의 제4조의3)제1항제1호 중 "제4조의4"를 "제4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4조의5"를 "제4조의7"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u>정화하는</u>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u>토양생태계를</u>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u>정화하며, 토양의 정화 및 토양의 탄소 저장·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는</u> ----- <u>토양의 건강성과 토양생태계</u>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토양정밀조사”란 <u>제4조의2</u> 에 따른 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 <u>제4조의4</u>		
			-----	-----
			-----	-----
			-----	-----
			-----	-----
			-----	-----
			-----	-----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토양탄소”란 토양 내에 유기물 또는 무기물 상태로 저장		

<신 설>

<신 설>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신 설>

2. ~ 7. (생략)

④ ~ ⑥ (생략)

<신 설>

된 탄소를 말한다.

9. “토양탄소 흡수·저장”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토양 내에 흡수하고 토양 내 저장된 탄소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영구적 또는 장기적으로 토양 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토양탄소 흡수·저장원”이란 토양 내에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토양탄소 흡수·저장원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 8. (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의2(토양탄소 흡수·저장원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신 설>

은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
여 토양탄소 흡수·저장원 조성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토양탄소 흡수·저
장원 조성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토양탄소 흡수·저장
원의 조성·확충 및 개선 사업
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3(토양탄소 흡수·저장 기
술 개발 및 산업육성 등)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고 관
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양탄소 흡수·저장원의 조
성·확충 및 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2. 토양탄소 흡수·저장원 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3. 토양탄소 흡수·저장원 관련
산업기반 조성 및 인프라 구

	<u>축 등에 대한 지원</u> <u>4. 그밖에 토양탄소 흡수·저장</u> <u>기능 증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u> <u>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u>제4조의2</u> (생략)	<u>제4조의4</u> (현행 제4조의2와 같음)
<u>제4조의3</u>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u>제4조의3</u> ① ----- ----- ----- ----- -.
1. <u>제4조의4</u> 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	1. <u>제4조의6</u> ----- -----.
1의2. <u>제4조의5</u> 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	1의2. <u>제4조의7</u> -----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제4조의4</u> · <u>제4조의5</u> (생략)	<u>제4조의6</u> · <u>제4조의7</u> (현행 제4조의4·제4조의5와 같음)